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및 관리 등〉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58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01958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안 56조의2 신설)	2
※ 참고자료	10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0195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7. 18.
3. 회 부 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는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설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음.

한편, 이와 관련한 시범 사업 분석 결과, 마을주민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34.1% 감소하는 등 그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동 사업을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좀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29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안 56조의2 신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인근 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도로의 일정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고,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29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u><신설></u>	법률 제2029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의4(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도로의 일정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

현 행	개 정 안
	<u>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1. <u>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u> 2. <u>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u> 3. <u>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u> ④ <u>제1항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기준, 절차·방법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국토교통부는 국도주변 마을주민의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속도제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¹⁾ 현재 「마을주민 보호구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이 시행 중임.

개정안은 이러한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로 주변 마을주민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1)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다만,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우선 “도로표지”의 경우 도로의 방향 노선 등을 안내하는 표지²⁾를 뜻하는데, 마을주민 보호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³⁾을 설치 대상 시설물의 예시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음으로 “도로안전시설”의 경우 「도로법」에 따를 때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미하는데, 현행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도로부속물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관련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⁴⁾ 도로안전시설의 상위 개념인 “도로의 부속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

2)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3)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4) 「마을주민 보호구간설치 및 관리지침」

2.2 보호구간 내 안전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마을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단속장비 설치, 보도 및 도로부속물 설치 등 보호구간 내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대해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 취지에 공감하며 규정 내용의 일부 수정을 통해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5

5)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
· 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참고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개념) 국도주변 마을주민의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속도제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환경 개선
- (추진현황) 2015년~2018년 시범 사업 및 1단계(2019~2020) 총 246개 구간, 2단계(2021~2023) 총 180개 구간 설치 추진(누계 426개 구간)

< 1단계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현황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
구간 수	14	20	30	30	90	62	246

< 2단계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추진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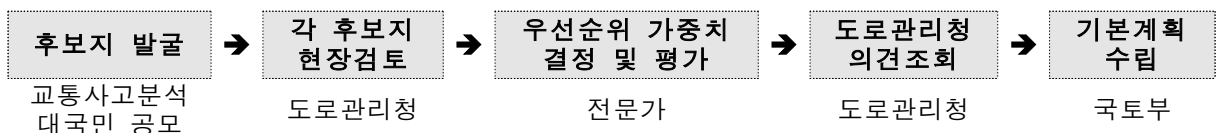
합 계	'21년(완료)	'22년(완료)	'23년
180개소 / 360억원	60개소 / 120억원	60개소 / 120억원	60개소 / 120억원

* '23년 60개소 중 47개소 완료, 13개소 '24년 상반기 완료 예정

□ 3단계(2024~2026) 기본계획

- 3년간 **54개 지자체 총 139개 구간 설치 예정**

< 마을주민보호구간 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3단계 설치계획 >



구분	소계	2024년	2025년	2026년
소계	139	47	47	45
서울청	12	5	3	4
원주청	16	5	5	6
대전청	14	5	5	4
익산청	57	19	20	18
부산청	40	13	14	13

□ 주요 사업내용

- (속도 하향) 도로관리청이 도로 기능을 감안, 시·도경찰청장과 협의
* (편도1차로 도로) 시속60→ 50km/h, (편도2차로 이상도로) 시속80→ 60km/h
- (안전시설 등 설치)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무안 교통단속장비, 횡단보도, 횡단보도조명, 보도 등 설치